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. 8. 11 선고 2019가단53827 판결 [수목수거 및 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순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

변론 종결 2020. 7. 28

판결 선고 2020. 8. 11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 피고 B은 서산시 D 임야 2,747㎡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 한다)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, 21, 20, 19, 18, 17,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8㎡ 및 같은 감정도 표시 27, 28, 29,

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㎡ 에 설치된시멘트 콘크리트 배수관을 철거하여 위 임야 부분을 인도하고, 피고 C은 5,000만 원과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는 서산시 D 임야 2,747㎡(이하 '이 사건 임야과 한다) 및 E 임야 3,597㎡ 를 1980. 11.경 매수하여 1994. 4.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 C은 현재 서산시 F 전 9,502㎡를 소유하고 있는데,2013. 12. 10. 위 F 토 지에서 G 전 335㎡를 분할하였고, 원고는 2013. 12. 11. 자신 소유의 위 가항 기재 E임야에서 H 임야 335㎡를 분할하였으며,원고와 피고 C은 2014. 2. 14. 위 피고 소유의 G 전 335㎡와 원고 소유의 H 임야 335㎡를 서로 교환하여 G 전 335㎡는 원고 소유, H 임야 335㎡는 피고 C의 소유가 되었다.

다.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, 21, 20, 19, 18, 17,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근) 부분 8㎡ 및 같은 감정도 표시 27, 28, 29,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的 부분 6㎡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재질의 배수관(이하 '이 사건 배수관'이라한다)이설치되어 있다.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 청구의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이 이사건 임야의 일부에 이 사건 배수관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철거 및 그 토지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고,또한 피고 C이 2013. 3.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서토사를 무단으로 파내어 그 흙으로 자신 소유의 F 토지상의 논을 메꾸어 밭으로 만드는 평탄작업을 하였는바, 이와 같이 무단으로 파내어 간 흙이 15톤 트럭

500대 분량이므로 15톤 트럭 1대당 10만 원으로 계산한 5,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배수관을 피고 B이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또한 피고 C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서 무단으로 흙을 파내어 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안동철

별지